

# 세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!

Covid-19 퇴거 유예가  
만료되는 경우.....

시애틀의 추가 퇴거 보호  
조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



- **Covid 관련 지불 불능:** 2020년 3월 3일부터 유예 만료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의 퇴거 금지
- **겨울철 유예:** 소득에 따라 자격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퇴거 금지
- **학기 유예:** 9월부터 6월까지 학생(보육원-18세 미만), 교사 및 교직원이 있는 가구의 퇴거 금지

## Renting in Seattle

상담 전화: (206) 684 - 5700

[www.seattle.gov/rentinginseattle](http://www.seattle.gov/rentinginseattle)



## 지원

- 퇴거 통지서를 받은 경우 Renting in Seattle(시애틀 임대) 상담 전화에 연락하십시오. 통지서가 City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자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최신 임대료 지원 자원은 2-1-1로 전화해 주십시오.
- 귀하께는 *Right to Counsel*(상담 받을 권리)가 있습니다. 퇴거를 당하고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City에서는 **Housing Justice Project(HJP, 주택 정의 프로젝트)**와 협력합니다. 법원 문서를 받으시면 HJP에 (206) 267-7069번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[hjpestaff@kcba.org](mailto:hjpestaff@kcba.org)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.



City of Seattle